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재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8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2일

발 의 자 : 박기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호진, 노승재, 문병훈, 박순규,
이광호, 이영실, 이은주, 이정인,
채유미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추천 2명, 해당 기관의 이사회 추천 2명,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나,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그 근거가 없으며,
-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·균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그 구성을 시장 추천 3명,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,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규정함(안 제 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
 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. 그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<p><삭제>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